

신고 제 호

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증명서

교습소명			사진 (3cm×4cm)
교습자	성명	생년월일	
교습과목			부제 횟수:
교습장소 (주소)			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직인